

품목분류
CASE 8 장식용 베개

판정번호
N361981

물품 정보

용도

- 카우보이 부츠 형태의 쿠션(베개)
- 실내 장식용으로 제작된 물품

형태

- 겹감 및 충전재: 폴리에스터 재질
- 프린트·자수·리벳·리본·프린지 등 다양한 장식 요소 부착

쟁점 HS



제 9404 호

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

제 6307 호

기타 방직용 섬유제품

CBP 판단

- 신청인은 쟁점물품을 베개로 보아 제9404호(침구류)에 분류할 것을 주장
- CBP는 다음 사유로 베개로서 실용적 기능보다 장식 기능이 주된 물품으로 판단
 - 리벳·리본·프린지 등 장식 요소와 부츠 형상으로 인해 베개로 사용하기에 부적합
 - 베개로 사용 시 장식 요소가 마모되어 외관상 가치 저하
- 침구류가 아닌 기타 섬유제품(제6307호)으로 분류

미국 HS-CODE 결정

6307.90

기타 방직용 섬유제품

베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와 용도로 인해 침구가 아닌, 기타 섬유제품으로 분류